#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지역산업을 선도할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성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을 갖춘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약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1 사업목적

□ 기술혁신성을 바탕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미래 전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핵심기업 육성

### 2 선정개요

- □ 선정규모: 15개사 내외(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의 20%내외 쿼터제 실시
- □ 지정기간 : 3년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운영기관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구 분	내용
도약기업	○ 기술력이 탁월하고 지속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전년도 매출액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24년 결산 기준) ※ 일반트랙, 지역균형트랙의 신청자격 조건은 동일
일반트랙 (TRACK)	○ 소 재 지 : 전북소재 사업장 ○ 선정절차 : 일반에 신청한 기업 간 ①서류-②현장-③대면심사 진행
지역균형 트랙 (TRACK)	○ 소 재 지 : <u>인구소멸 고위험 지역[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앤</u> 에 <u>본사 소재지</u> 가 위치한 경우 ○ 선정절차 : 지역균형트랙에 신청한 기업 간 ①서류─②현장─③대면심사 진행

## □ 지원내용

지원연도		내 용
	LEVEL-UP	○ 15백만원 限 / 자율지원(기술개발 / 현장애로 / 마케팅 등)
2025년	ESG경영진단	○ ESG 경영진단 및 인증지원
	기 타	○ IR 자료제작 지원, 네트워킹 등
	세부사업별 별	도 <b>신청 필수</b> (1~2월 경 모집 예정,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026	기술개발	○ <b>90백만원 限</b> / R&D
~2027년 (예정)	현장애로	○ <b>40백만원 限</b> / 공정개선
	마 케 팅	○ <b>25백만원 限</b> / 마케팅

※ 2026~27년 : 각 세부 사업별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운영내용 변경 가능

# 신청자격

J	건정자식	
	구 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
	대상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의 "제조업(C10~C33)", "정보통신산업(J582, J62~J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0)" 사업자(공장등록증 등 공식자료 기준)
	매출기준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24년도 결산 기준)
	업 력	• 창업한지 3년 이상(결산 3회 이상)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의 확인서 제출]
신 청	종 사 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무(대표자 제외)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준)
자 격	연 구 소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운영중인 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 또는 연구소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소 재 지	• 전북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우대사항	• ESG 경영 실천기업(육아휴직, 사회공헌활동 등) • 유망중소기업 / 우수중소기업인/도지사 인증상품 / 수출의탑 수상 등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기업 등 • 2024년도 주관기관 행사 참여기업 등 ※ 가점 항목은 인증 및 지정기간 내에만 유효 ※ 이외에 우대사항은 가산점 항목 참조
	지위제하	•월드클래스 300 기업 •혁신기업(구 스타기업)

지원제한

- 글로벌 전문, 강소기업 도약기업/선도기업(졸업기업 포함)

# 4 신청자격 해당 산업분류 코드

###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1차)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산업분류 검색 및 상담 : http://kssc.kostat.go.kr

구분	상위코드	산업분류	하위코드
제조업	С	제조업	10 ~ 33 : 제조업 분야
정보통신산업	J	정보통신업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 정보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 연구개발업

# 5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내용 : 선정 도약기업(45개사) 대상, 제한 경쟁을 통한 사업지원

구 분	지원사업명	사 업 내 용	지원규모
신규기업 지원	레벨업 패키지 지원 ESG경영진단 및	□ 기업 수요 반영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예산 한도 내 패키지 지원 □ E,S,G 각 영역별 세부 등급 및 종합등급 제공하여 취약영역별 개선 권고(안) 제공	15개사 (신규 필수)
	인증지원	□ ISO 14001, ISO 9001, ISO 50001 등 <b>ISO 인증 지원</b>	
기술개발	기술개발 (R&D)지원	□ 기술개발(R&D) 역량강화 지원(산학연 협력 운영 가능) -(기술융합형) 이(異)업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제품 및 기술개발 -(생산성혁신형) 현(現) 주력제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 -(신기술·제품 창출형) 신기술 적용,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기술개발	최대 90백만원 (기업부담금 20% 납부 필수)
	현장애로 기술해결지원	□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 공정으로의 전환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ESG 공정개선'  ─공정의 효율성 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자동화 공정개선'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시금형 제작 등	최대 40백만원 (기업부담금 10%~30% 납부 필수)
사업화	사업화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국내) 국내 지식재산권 및 인증획득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라이브커머스, 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해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기술교류 지 원, 수출계약을 위한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 및 국외출장 지원 등	최대 25백만원 (기업부담금 10% 납부 필수)
	런닝메이트 프로그램	□ 기술개발(R&D) 연계 고도화 멘토링	12건
역량강화	IR 자료제작 및 투자유치 지원	<ul><li>IR 자료제작 및 투자유치 지원</li><li>기업 IR 교육 및 컨설팅 지원</li><li>투자유치를 위한 IR 자료 제작 지원</li></ul>	7건
	도약기업 네트워킹 운영	<ul> <li>사업 애로사항과 정보 공유를 위한 기업 간 네트워킹 교류회 추진</li> </ul>	3건
	성장사다리 동반성장 지원	<ul><li> 돋움-도약-선도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li><li> 돋움기업-도약기업-선도기업간 거래 증대 및 활성화 지원 바우처</li></ul>	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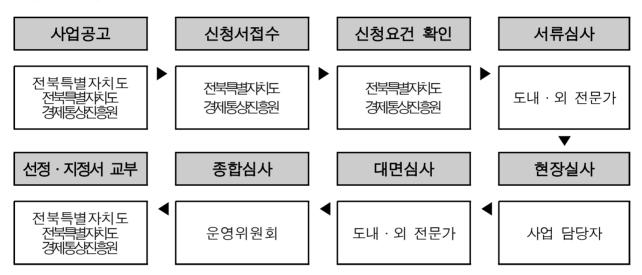
<sup>※</sup> 각 세부 사업별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운영내용 변경 가능

# 6 선정방향

- □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중심 기반의 중소기업 선정
- □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 □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매출 생산능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
- □ 사업성·미래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비전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

# 7 선정절차

□ 추진절차



-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평가배점

구 분	서류심사 점수 (혁신역량 자가 진단)	현장실사	대면심사 점수
배 점	100점	현장실사	100점
선 정	2배수	_	15개사 내외 (서류40%, 대면60%)
가산점	최대 10점 가산	_	_
과 락		각 항목별 40점 미만	

# □ 심사단계별 선정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배 점	100점	심사장소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단계) 서류	선정규모	2배수 ※가점 포함 40점 미만 탈락	심사위원	도내·외 전문가 6인				
시	심사내용	○ 신청서 기준 기업의 혁신 기	제출된 제반서류 확인, 신청요건 확인, 서류 심사 평가표 등 심사 신청서 기준 기업의 혁신 기반, 재무건전성, 가산점 등을 심의 신청서 기준 기업의 향후 성장잠재력(보유 기술·제품경쟁력 확보전략, 자금 조달 방안 등) 심의					
	배 점	_	실사장소	신청기업 지정장소				
	선정규모	_	실사위원	사업 담당자				
(2단계) 현장	실사방법	○신청서 기준 질의응답 및 현	현장 확인 등	(기업별 60분 내외)				
실사	참석대상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등						
	실사내용	○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기업환경, 경영상태 등 심사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보유·운영 상태), 기술혁신 역량(기술확보 수준), 시장확대 역량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토						
	배 점	100점	심사장소	(재)전북 <del>특</del> 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선정규모	15개사 내외 (서류40%, 대면60%) · 각 트랙별 고득점 순	심사위원	도내·외 전문가 5인				
(3단계) 대면	심사방법	○PPT 발표 및 질의응답 등 인터뷰심사						
심사	참석대상	○대표자(전문경영인) 필수참여 권고						
	심사내용	○ 신청기업 CEO의 경영전략 발표 및 인터뷰를 통한 혁신기반, 혁신활동, 기술경영 등 심사 ○ 신청서, 대표자 발표 등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질의 • 응답 실시 ○ 대표자(전문경영인) 인터뷰심사 불참 시 감점 처리						
	위원구성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운영위원회				
(4단계) 종합	심사대상	○15개사(서면, 대면심사 통	과 기업)					
심사	심사방법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면심 통해 선정 대상기업 확정	사 결과 등을	을 종합적으로 심의 및 토론을				

# □ 심사단계별 평가항목 ○ 서류심사(1단계)

구분	세부분야	심사항목	배점
		• 신청기업의 업력 3년 이상, 대표자 지분 20% 이상 보유	3
	경영역량	•세금 체납/연체 사실 없음	2
경영기반		•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소재	5
(25)	근로자 수	• 종사자 수(상시근로자)	5
	여기여라	• 연구개발 부서 현황	5
	연구역량 	• 연구개발 전담인력 보유	5
	혁신인증	• Ino-biz, Main-biz, Venture(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5
혁신활동	품질관리	•최근 3년간 품질규격인증유무(NET인증, HACCP, ISO 등)	7
(25)	지식재산권	•최근 3년간 국내/외 특허, PCT, 실용신안, 의장 등	8
	성장잠재력	•향후 3년간 기업 보유 성장잠재력	5
	• 매출액(직	전년도)	10
	• 수출액(직	전년도)	10
┃   재무건전성	• 최근 3년2	<u></u>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10
및 경영성과	• 최근 3년2	<u></u> 고용증가율	5
(50)	• 최근 3년2	<u>나</u>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 유동비율(	직전년도)	5
	• 부채비율(	직전년도)	5
		합 계	100

# \* 가산점(최대 10점)

구 분	세 부 내 용	배점	비고	
인증 및 수상	정부 및 지자체 포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출의 탑 수상 가족친화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		•1점/1건(최대 2점) ※ 접수마감일 기준	
	우수중소기업인 / 도지사인증상품 지정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내	
ESG 경영	<ul> <li>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li> <li>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li> <li>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li> <li>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접수마감일 기준 실시 여부 및 실시인원 기준)</li> </ul>	2점	•실시유형 : 1점/건 (최대 1점) •대상인원 : 1점/인 (최대 1점)	
	• 육아휴직제도 실시기업 • 유연(탄력)근무제도 실시기업 (22년~접수마감일)	2점	・실시유형 : 0.5점 (최대 1점) ・대상인원 : 1점/인 (최대 1점)	
	• 사회공헌활동 실적 보유(22년~접수마감일)	1점	• 실적보유 : 1점 (최대 1점)	
	•기업 ESG 등급 보유	1점	• 등급보유 : 1점 (최대 1점)	
기타	• 투자 IR 실적 보유(22년~접수마감일)	1점	• 실적보유 : 1점 (최대 2점)	
	• 2024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관 IR 행사 참여 기업 - JB 유니콘 IR 챌린지 - 호남권 IR Matching Conference	1점	•참여여부 : 1점 (최대 1점)	

### O 현장실사(2단계)

- 실사방법 : 총괄책임자, 연구소장 등 면담 및 현장 점검

- 실사내용 : 신청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기업환경, 경영상태 등

구분		심 사 지 표		사 결	과
一十七		심 사 시 표	양호	보통	미흡
		∘근로자의 근무 여건 및 사무 환경			
	기업환경	∘생산 현장 위험물 관리 및 안전대책 등			
경영   환경		∘공장 주변 환경 및 안전관리, 청결 상태 등			
10	AU 417171	∘생산 설비 보유 및 운영 현황			
	생산관리	∘공장 및 품질관리 운영 현황			
a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소 현황	연구개발 인프라	∘연구개발 공간 구성 및 운영 실태			
1.0		∘연구기자재, 시설, 장비 가용 여부 및 유지상태 등			

### O 대면심사(3단계)

- 감점사항 : 대표자 미참석(-5점), 대리발표(-2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비고
건(C) 참 시	•경영계획의 목표 및 적정성, 조직관리의 체계성	20	
경영혁신	• CEO 경영혁신 의지	10	
	•지역일자리 창출 및 연관산업 파급 효과	10	
혁신활동	•미래 제품(사업) 방향의 적정성	10	
	•시장 확대 전략의 타당성	10	
기스거(1	•기술확보 전략 방향성 및 적정성	20	
기술경영	•기술의 차별성	10	
관심도	• 도약기업 선정 의지 및 지원사업 활용 계획 적정성	10	
	합 계	100	

### O 종합심사(최종 선정심사)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 결과와 지역사회 활동 사항,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선정

# 8 신청 및 접수방법

- □ 공고/접수일정 : 2025. 3. 10.(월) ~ 4. 10.(목), 18:00 까지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 \* www.jblc.or.kr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
- □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제출서류 등 www.jblc.or.kr 에서 다운로드)

No	제 출 서 류	비고
1	■【서식 1호】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신청서	
2	■【서식 2호】신청기업 혁신역량 자가진단서	-
3	■【서식 3호】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4	■【첨부서류: 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연구소기업 인증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정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급 ※ 제출서류: 인정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기자재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말소사항 포함, 법인기업에 한함)  - 2022~2024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제조원가명세서 /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 ※ 2024년도의 경우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및 정부24에서 발급) ※ 인정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3년간 종업원 수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기준: (22년~24년) 12월 말 기준 / (25년)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주명부 (접수일 기준)	필수
5	■ 【첨부서류: 평가점수 증빙 제출서류】  - 신청기업의 공장등록증(사본)  - Ino-biz, Main-biz, Venture 등 인증서 (접수마감일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NET, HACCP, ISO/TS 등 인증서 (발급기준: 2022년~접수마감일)  - 국내·외 특하, PCT, 실용신안, 의장등록 증서 (발급기준: 2022년~접수마감일)  - 기업 및 제품소개 자료(카탈로그, 기타 자료 등)  - 수출실적 증명원(2022년~24년 /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확인서 KITA, Utradehub)  ■ 【첨부서류: 가산점 증빙 제출서류】  - 정부 및 지자체 포상,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수출의탑 수상(2022년~접수마감일)  - 가족친화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 전북우수중소기업인 / /전북도지사인증상품 지정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기업  ※ 2022년~접수마감일 기준, 인증기간 내  -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내일채움공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실시 협약서 및 청약서 (접수마감일 기준 실시여부 및 실시인원 기준)  - 육아휴직제도 실시기업·유연근무제 실시 증빙서류 (발급기준: 2022년~접수마감일)  ※ 기업 내규, 육아휴직 확인서 등  - 사회공헌활동 실적 보유(2022년~접수마감일)  - 투자 IR 실적 보유(2022년~접수마감일)  - 기업 ESG 등급 진단서  - 기타 해당 기업의 경쟁력, 기술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 외부기관 발급 서류 :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 유의사항 9

- □ 등록기간 내 전산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를 미 제출하거나 제출기준 또는 인정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서류 제출시 해당 심사항목은 "0"점 처리됨 □ 전산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사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선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도약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본 사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관 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관련하여 담당지에게 내외부로부터 청탁(부탁 포함)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업은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에 따라.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금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상위단계에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서 조기 졸업되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공고일 기준)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①~⑫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역행기업(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 진입불가)

-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③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④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⑥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⑦ 대기업
- ⑧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있는 기업
- ⑩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
- ⑪ 신청자격의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⑫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10 문의 및 상담

-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 (☎ 063-711-2035, 2164) 안수민 담당관, 이다영 선임담당관

# 11 첨 부 자 료

- 1. [서식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신청서
- 2. [서식 2] 신청기업 혁신역량 자가 진단서
-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4. [서식 4] 청렴서약서
- 5. [참고자료 1]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신청서 작성요령
- 6. [참고자료 2]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7. [참고자료 3] 연구소전담부서 온라인 신규설립 작성요령

## 12 연계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

-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 O 지원내용
    - 지워한도
      - 일반기업 : 최대 5억원 이내 \*이차보전) 기업당 2.0%
      - 우대기업 : 최대 7억원 이내 \*이차보전) 기업당 3.0%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기업
      - 기존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 군청에서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지식기반산업 및 영산산업
        - · (지식기반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